

## 2. 주요내용

가. 창고·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(안 제7조의2, 제24조)

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,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.

나.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(안 제24조제1항)

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.

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축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330호  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
- 전화(☎) 044-201-4992,4988 / 팩스 044-201-5575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099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# 「건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 1. 제안이유

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(20.6.18.)에 따라 모든 창고·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,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(안 제19조제7항)

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(창고·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)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.

나. 모든 창고·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(안 제61조)  
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 
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, 창고시설로 확대함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 
 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축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 
 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330호  
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
- 전화(☎) 044-201-4992,4988 / 팩스 044-201-5575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113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 
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
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 
 바랍니다.

2020년 8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

### 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비손푸른엔지니어링(주) (이세홍)
- 나. 전화번호 : 02-445-5805

2. 명칭 :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  
 감기술

### 3. 내용요약

<분야>

기계설비 / 환경기계설비 / 기타 환경기계설비

<기술의 요지>

신청기술은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후 여과재를 역세척하는 기존의 단계별 공  
 정을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일공정으로